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9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안 제73조의4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9.

다.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안 제7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연체료등”)를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체납자 주소·거소 확인 - 체납자 재산 조사 - 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 - 위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위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¹⁾·대부료²⁾,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³⁾, 변상금⁴⁾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1)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2)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3)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4)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또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0조⁶⁾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기금의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24년 토지매각대 63억원, 건물대여료 113억원, 토지대여료 286억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미수납 상태임.

[2021~2024년 연도말 기준 이행기간 도래 미수납채권 현황(누적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1	2022	2023	2024
건물매각대	1	0	0	0
토지매각대	207	99	126	63
건물대여료	80	84	104	113
토지대여료	260	261	289	286

자료: 재정경제부

- 5)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6)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7)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⁸⁾, 채권의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불납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절차를 완료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개정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유재산 관련 채권의 징수와 관련하여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등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납률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국유재산 관련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채권⁹⁾으로서 이미 동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기한 도과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 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⁰⁾, 이에 따라

8)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10)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를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채권 채납액 관련 징수 사실행위를 수행 중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국가채권 채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소·거소확인	5,696	4,193	5,806	1,440	24,254
재산조사	60,543	69,113	156,491	79,805	71,221
안내문 발송	225,020	242,777	171,005	398,734	379,210
전화·방문상담	66,228	54,937	39,506	20,951	17,896
계	357,487	371,020	372,808	500,930	492,581

자료: 재정경제부

주: 국세 및 국가채권(국유재산채권 포함) 채납액 전체에 대한 사실행위 수행 건수로, 채납액 세목 별 건수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한편, 개정안은 업무 위탁의 대상이 되는 채권(“연체료등”)의 범위를 미납부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자금 채권도 국유재산 관련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안에 따른 “연체료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현재도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이 가능하므로 「국유재산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물」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채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채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채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채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채납자의 재산조사
 3. 채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채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이하 이 조에서 “연체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 조사 3. 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연체료등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60